

[www.pwc.com/id](http://www.pwc.com/id)

***KAFA***  
***2014년 1분기 개정세법 요약***  
***April 2014***



---

# Value Added Tax (1)

## □ Small Entrepreneurs: Non VAT-able

- MoF Regulation No.197/PMK.03/2013
- 주요 개정내용
  -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(PKP: Pengusaha Kena Pajak)의 기준을 연매출액 Rp 600 million 에서 Rp 4.8 billion으로 상향 조정
  - 2013년 신설된 법인세법상 1% final tax – Article 4(2) – 를 적용받는 “소규모 사업자”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됨 (GR No.46/2013)
  -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
- 관련규정
  - 소규모 사업자 신청: MoF Regulation No.20/PMK.03/2008 – 과세당국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조사하여 결정내려야 함. 결정이 없는 경우, 승인된 것으로 간주
  - 소규모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: 초과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일반과세자 변경을 위한 사업내역(Usahanya)을 보고, 미보고시 과세당국은 직권으로 일반과세자 변경할 수 있음

## Value Added Tax (2)

### □ Claiming Input VAT on integrated business activities

- MoF Regulation No.21/PMK.011/2014
- 주요 개정내용
  -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(PKP) 중, 면세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,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
  - FFB(면세재화)를 생산하여CPO(과세재화) 생산에 전용하는 사업자의 경우, 과거 FFB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, 규정 개정으로 공제 가능하게 됨
  -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

### □ “Have failed to produce” – Input VAT of a new company

- MoF Regulation No.31/PMK.03/2014
- 주요 개정내용
  - 신규사업자의 경우, 상업생산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“자본재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음
  - 그러나 최초 매입부가세를 공제 신청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, 생산실패(have failed to produce)로 간주하여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월 2%(최대 24개월)의 penalty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
  - 3년이 지난 시점 이후 2년간(총 5년)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나, 총 5년이 경과하여도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, 환급세액 반납과 상기 penalty 납부의무가 발생하며, PKP는 자동 취소됨

---

# General Tax

## □ Interest compensations from the tax office

- MoF Regulation No.226/PMK.03/2013
- 주요 개정내용
  - 과세당국에 이자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명시 – 상호합의(MAP)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조세기본법(KUP) 6조 (1)의 (d)에 따른 Tax assessment cancellation letter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

## □ Tax on e-commerce

- DGT Circular Letter No.SE-62/PJ/2013
- 주요 내용
  - E-commerce를 4가지로 구분: Online marketplace, Classified Ads, Daily Deals, Online Retail
  - E-commerce를 세무목적상 일반 상거래(common trading business)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

## □ New excise rates on alcoholic drinks

- MoF Regulation No.207/PMK.011/2013
- 주요 내용
  - Local products Rp 13,000 ~ 80,000 (이전 Rp 11,000 ~ 75,000)
  - Imported products Rp 13,000 ~ 139,000 (이전 Rp 11,000 ~ 130,000)

---

## ***Other Regulations***

### **□ Offshore Loan reporting obligation**

- BI Regulation No.14/21/PBI/2012
- 주요 내용
  - 2012년 발표된 BI의 해외 차입보고 의무규정이 2014년 2월부터 본격 시행
  - 사업 및 형태 구분없이, 인도네시아의 모든 거주자는 Foreign Exchange Traffic Activities Reporting(LLD/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)를 BI에 제출하여야 함
  -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20일까지 변경신고 가능. 지연제출 시, Rp 500,000 / day 벌금부과 (최고 Rp 5 million). 익월말까지 미제출 시, 미신고로 보아 미신고 벌금 Rp 10 million 부과

### **□ New regulation for recruiting foreign workers**

- MoM Regulation No.12/2013 (PER-12)
- 주요 내용
  -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, 채용 사유·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등 추가적인 문서제출 필요
  - 단기고용 work permit: 최장 6개월의 단기고용 IMTA 규정 신설
  -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요건으로, (1) 관련 교육 이수 및 (2) 관련 직종 5년 이상 근무요건을 모두 갖추 것을 요구(과거, 둘중 하나만 갖추면 되었음), 다만 5년 이상 근무요건은 certificate of competency로 대체 가능
  - 인도네시아 국적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TA-01 신청 필요없이 일할 수 있음 ㅋㅋㅋ